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육지와 연결된 섬지역에 대한
추가요금 부과 금지 〉

■ 김원이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2056호)

2024. 8.

국 토 교 통 위 원 회
전 문 위 원 관 현 준

목 차

□ 김원이의원 대표발의(2202056)	1
Ⅰ. 제안경위	1
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Ⅲ. 검토의견	2
1. 육지와 연결된 섬지역에 대한 화물 추가요금의 부과 금지 (안 제38조의2 및 제51조제1항제12호의2 신설)	2
가. 개정안의 내용	2
나. 검토의견	3
다. 국토교통부 의견	7

□ 김원이의원 대표발의(2202056)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김원이의원 등 11인
2. 제 안 일 : 2024. 7. 22.
3. 회 부 일 : 2024. 7. 23.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방과제 또는 교량 등으로 육지와 연결된 섬에 대해 도서(섬)지역으로 지정하여 물류비를 부과하는 것에 대한 규정이 없음.

그런데 일부 택배사에서는 방과제 또는 교량으로 연결되어 사실상 육지와 물류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차이가 없음에도 도서(섬)지역으로 분류하여 물류비를 할증하여 부과하고 있어, 해당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바, 이들 지역에 거주하는 소비자의 권리 향상을 위해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가 계속되어 왔음.

이에 택배서비스사업자에게 실제로 육지와 다름없는 방과제 또는 교량 등으로 육지와 연결된 섬지역의 운임을 육지와 육지 사이의 화물 운임이나 요금보다 더 많이 받지 못하게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38조의2 및 제51조제1항제12호의2 신설).

Ⅲ. 검토의견

1. 육지와 연결된 섬지역에 대한 화물 추가요금의 부과 금지 (안 제38조의2 및 제51조제1항제12호의2 신설)

가. 개정안의 내용

안 제38조의2는 택배서비스사업자가 육지와 연결된 섬지역과 육지 사이의 화물운임이나 요금을 육지보다 많이 받는 행위를 금지하려는 것이고, 안 제51조제1항제12호의2는 배송비 추가요금 부과 금지를 위반한 경우에 대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6장 <u>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보호 및 서비스의 향상</u> <u><신설></u>	제6장 <u>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보호 및 서비스의 향상 등</u> <u>제38조의2(육지와 연결된 섬지역 배송 화물에 대한 추가요금 부과 금지)</u> <u>택배서비스사업자는 방파제 또는 교량 등으로 육지와 연결된 섬지역과 육지 사이의 화물 운임이나 요금을 육지와 육지 사이의 화물 운임이나 요금보다 많이 받아서는 아니된다.</u>
제5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12. (생략) <u><신설></u>	제51조(과태료) ① ----- ----- ----- 1. ~ 12. (현행과 같음) <u>12의2. 제38조의2를 위반하여 추가로 운임이나 요금을 받은 택배서비스사업자</u>

현행	개정안
13. · 14. (생략) ② (생략)	13. · 14.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나. 검토의견

안 제38조의2는 방과제 또는 교량 등으로 육지와 연결된 섬지역(이하 “연륙도”)과 육지 사이의 화물 운임이나 요금을 육지와 육지 사이의 화물 운임이나 요금보다 많이 받는 행위를 금지하려는 것임.

연륙도는 육지와 분리된 섬으로서의 기능보다 육지와 유사한 지리적 특성을 지니게 되는됨에도 연륙도 지역을 도서지역으로 분류하여 도서선료 명목 등으로 추가요금을 부과하였던바, 이에 대하여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었음.¹⁾

이에 지난 2022년 10월 일부 택배사들은 연륙도에 대한 추가배송비 폐지에 대한 요청에 대하여 부과하지 않겠다고 공식답변한 바 있음²⁾.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택배사들과 온라인 쇼핑몰 판매자들이 여전히 추가 배송비를 부과하고 있어 연륙도 지역 주민들의 피해가 계속되고

1)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연륙도에 대한 추가배송비와 관련하여 민원이 제기되었다는 설명임.

2) 연합뉴스, 연륙 섬 추가배송비 폐지…서삼석, 택배3사 간담회 결실, 2022.10.5.

<https://www.yna.co.kr/view/AKR20221005047400054>

있다는 지적이 있음³⁾.

이에 연륙도 주민의 재산권 보장을 위하여 택배의 추가요금 부과를 금지하려는 개정안의 입법취지는 긍정적인 것으로 보임.

참고로, 우체국택배는 「우편법」 제14조⁴⁾ 및 「국내소포 우편요금 및 소포이용에 관한 수수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따라 특수배송비를 받지 않고 있음.⁵⁾

다만, 시장가격은 시장참여자 간 공급과 수요 원리에 따라 결정되므로 동 사안에 대한 공공부문의 개입이 바람직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음.

또한, 지난 제21대 국회에서 동일한 내용의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

3)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CJ대한통운, 한진, 롯데 택배3사, 연륙도 도선료 없었는데 로젠택배는 버젓이 추가 운임, 2023.05.12.

<https://www.consumer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678352>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택배 '연륙도' 추가 배송비 폐지 공염불?...오픈마켓 도서지역 추가 운임 갈등 여전, 2024.05.21.

<https://www.consumer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705894>

4) 「우편법」

제14조(보편적 우편역무의 제공)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국에 걸쳐 효율적인 우편송달에 관한 체계적인 조직을 갖추어 모든 국민이 공평하게 적정한 요금으로 우편물을 보내고 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우편역무(이하 “보편적 우편역무”라 한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편적 우편역무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2킬로그램 이하의 통상우편물
2. 20킬로그램 이하의 소포우편물
3. 제1호 또는 제2호의 우편물의 기록취급 등 특수취급우편물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편물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편적 우편역무 제공에 필요한 우편물의 수집·배달 횟수, 우편물 송달에 걸리는 기간, 이용조건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5) 「국내소포 우편요금 및 소포이용에 관한 수수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별표에 따르면 소포 우편요금을 크기와 무게, 배달기간 별로 구분하되, 산간·도서지역에 관한 구분은 두지 않음.

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13113호, 2021.11.3. 김원이의원 대표발의)」이 발의된 바 있으나 임기만료폐기되었는데, 동 개정안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는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크므로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타당하고,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한국통합물류협회 등 사업자단체와 협의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음.

참고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제1호6)는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소비자와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23년 9월 동법에 따른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공정거래위원회 고시)」⁷⁾을 개정하여, 그 예시로서 배송사업자가 연륙교 개통 등으로 추가비용을 제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에게 추가비용이 배송비에 포함된 것처럼 계속 표시 또는 고지하는 경우를 들고 있는바,

6)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금지행위) ①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소비자와 거래하거나 청약철회등 또는 계약의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

7)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공정거래위원회 고시)」

II. 일반사항

10. 사업자의 금지행위 관련

- 가. 법 제21조제1항제1호의 규정과 관련하여,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는 행위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예시>

- (9) 연륙교 개통 등으로 배송사업자가 배송비에서 도선료 등 추가비용을 제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에게는 그 추가비용이 배송비에 포함된 것처럼 계속 표시 또는 고지하는 경우

택배사가 자율적으로 연륙도에 대한 추가비용을 폐지하였음에도 배송비에 포함된 것처럼 표시·고지하는 경우, 시정조치 또는 전자상거래 등의 일시중지를 명령받을 수 있고,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⁸⁾.

한편, 안 제51조제1항제12호의2는 택배서비스사업자가 연륙도에 대한 배송비 추가요금 부과 금지를 위반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는데,

현행법 시행령 별표 4⁹⁾에서 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금액을 위반횟수에 따라 최저 100만원에서 최고 500만원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정안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위반횟수별로 과태료 금액을 차등부과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과태료의 수준에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보임.

8)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시정조치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이 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에게 그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2. 제21조제1항 각 호의 금지행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제32조의2(임시중지명령)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의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가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에 대하여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시 중지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가 제21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

제45조(과태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금지행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9)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제4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참고.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별표4

다. 국토교통부 의견

소비자의 권리 향상을 위한 개정안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택배요금은 업계 스스로 결정할 사안이기 때문에 법에서 일률적으로 규율할 사안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고, 추가요금 부과 금지는 택배시장의 가격경쟁을 제한하는 성격이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임.

문 의 처
02)6788-5580

참고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별표4

■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별표 4]

과태료의 부과기준(제43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 동안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으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2) 위반행위를 지체 없이 정정하거나 시정하여 해소한 경우
-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그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늘려 부과하는 경우에도 법 제51조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 1) 위반의 내용 및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한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2차	3차

		위반	위반	이상
가.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않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같은 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한 경우	법 제51조제1항 제1호	300만원	400만원	500만원
나. 법 제5조제4항에 따른 등록요건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법 제51조제1항 제2호	100만원	150만원	200만원
다. 법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택배서비스 운송위탁계약의 갱신요구를 거절한 경우	법 제51조제1항 제3호	300만원	400만원	500만원
라.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상속, 양도·양수, 합병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51조제1항 제4호	100만원	150만원	200만원
마.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휴업·폐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51조제1항 제5호	100만원	150만원	200만원
바. 법 제14조제5항을 위반하여 택배서비스전용화물자동차의 자동차등록증 또는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반납하지 않은 경우	법 제51조제1항 제6호	300만원	400만원	500만원
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경우	법 제51조제1항 제7호	300만원	400만원	500만원
아. 법 제17조제4항을 위반하여 인증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경우	법 제51조제1항 제8호	300만원	400만원	500만원
자. 법 제19조제2항을 위반하여 인증표시 사용을 중지하지 않은 경우	법 제51조제1항 제9호	50만원	100만원	200만원
차.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서비스약관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51조제1항 제10호	100만원	150만원	200만원

카. 법 제34조를 위반하여 부당하게 이익을 수취하거나 되돌려주는 행위를 한 경우(동일한 행위에 대하여 동일한 사유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시정조치, 같은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과징금이 부과되었거나 같은 법 제67조제2호에 따른 벌칙을 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법 제51조제1항 제11호	300만원	400만원	500만원
타.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35조제7항에 따른 서비스평가를 위한 자료 제출 등의 요청 또는 실지조사를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자료 등을 제출한 경우	법 제51조제1항 제12호	100만원	150만원	200만원
파. 택배서비스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39조에 따른 개선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51조제1항 제13호	300만원	400만원	500만원
하.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44조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 서류를 제출한 경우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51조제1항 제14호	100만원	150만원	200만원